

공인 농산물 시장을 위한 프로토콜

최신 업데이트: (변경 사항은 노란색으로 표시함)

2021년 4월 22일: 공인 농산물 시장은 영업 허용 인원을 최대 수용인원의 75%로 늘릴 수 있습니다. 청소 요구사항을 CDC의 최소 청소 지침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했습니다. 유급 휴가 혜택 관련 언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COVID-19 사례 발생률, 입원율, 사망률이 계속 줄어들고,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역사회 확산이 여전히 중간 정도입니다. COVID-19은 지역사회에 여전히 위험하며, 모든 사람 사업체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확산을 늦추기 위해 운영과 활동을 변경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주정부의 안전한 경제 체제를 위한 청사진에서 규정한 "주황색 등급"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 활동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본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사업체는 주의깊게 진행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COVID-19의 잠재적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본 프로토콜의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인증 받고 캘리포니아 농림부의 요구 사항과 캘리포니아 소매업 식품 규정(CRFC)에 명시된 요구 사항에 따라 운영된 공인 농부 시장의 운영을 허용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본 로스앤젤레스 공중 보건국(DPH) 프로토콜을 준수했을 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공인 농산물 시장은 캘리포니아 소매업 식품 규정에 명시된 요구 사항에 따라 공인 농산물 시장 내 또는 인접한 임시 식품 시설(음식 가판대)을 별도의 지역사회 행사로 운영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 농산물 시장("시장") 및 인근 지역사회 행사는 시설을 담당하는 공인 시장 관리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 관리자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직원의 교육 및 증상 검사, 시장 내 공공구역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자재의 제공, 모든 안전 조치를 준수하는지 관리 감독, 및 공중 보건국, 지방 정부 용도구역법, 시 공무원으로부터 필요한 승인 획득을 담당합니다. 공인 농산물 시장에서 승인한 음식 가판대를 운영하기 위해 <http://publichealth.lacounty.gov/eh/DSE/CommunityEvent.htm>에 방문하여 공중 보건국의 허가증을 신청하십시오.

공인 농산물 시장은 DPH의 대규모 공연장/야외 라이브 행사 프로토콜에 따라 야외 라이브 행사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공인 농산물 시장은 DPH의 식당 프로토콜에 따라 야외 현장 식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 농산물 시장은 소매 영업은 DPH의 소매업체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이 문서는 추가 정보 및 자료가 확보되면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웹사이트 <http://www.ph.lacounty.gov/media/Coronavirus/>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본 점검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1) 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의 정책 및 실천 방법
- (2) 신체적 거리 두기를 위한 확실한 조치
- (3) 감염 통제를 위한 확실한 조치
- (4) 직원 및 일반 대중과의 소통
- (5) 중요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

귀하가 공인 농산물 시장 주최를 계획할 때 위 5가지 핵심 부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본 프로토콜에 적용되는 모든 공인 농산물 시장은 아래에 열거된 모든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조치가 귀하의 업체에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켓 관리자는 모든 프로토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 프로토콜의 복사본을 모든 상인과 공유해야 합니다.

공인 농산물 시장:

주소:

소방법에 따른 최대 수용인원:

75% 수용인원에 따른 최대 수용인원:

대중에게 출입을 허용하는 공간의
대략적인 총 평방 피트:

**A. 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의 정책 및 실천 방법
(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하십시오)**

- 본 프로토콜 사본을 모든 직원(시장 매니저 대리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및 가판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배포합니다.
- 취약계층 직원(만 65세 이상 고연령자, 만성 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가능한 한 집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나 시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된 업무를 할당합니다.
- 모든 직원(자원봉사자 및 상인 포함, 통칭 "직원"이라고 함)에게 아프거나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되면 시장에 나오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모든 직원은 해당되는 경우 공중 보건국(DPH)의 자가 고립 및 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질병으로 집에 머물러야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의 휴가 정책을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 카운티의 입장 증상 점검 지침**에 따라, 모든 상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들이 시장에 입장하기 전에 입장 증상 점검을 수행합니다. 증상 점검은 직원이 기침, 숨 가쁨, 호흡곤란, 발열 또는 오한이 있는지, 그리고 직원이 현재 고립 또는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원격으로 하거나, 직원이 도착하는 즉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체온을 점검합니다.
 - 음성 증상 점검(출입 허가): 증상이 없고 지난 **10**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일 근무를 위한 입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양성 증상 점검(출입 비허가):
 -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¹ 하지 않았고, 지난 10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현재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 또는 현장 근무를 시작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quarantine에 있는 격리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어떤 증상이라도 보이거나 현재 고립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 또는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고립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isolation에 있는 고립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직원들이 집에 머무를 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자격 대상 직원들에게 정부 또는 고용주의 휴가

¹ COVID-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란 2회 접종 백신(예: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또는 모더나)의 2차 접종 후 이(2) 주 이상 경과, 또는 1회 접종 백신(예: 존슨앤존슨(J&J/얀센))의 접종 후 이(2) 주 이상 경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는 [2021년 COVID-19 유급 병가 법규 부록](#)에 따른 직원의 병가 권리를 포함한 [유급 병가 및 COVID-19 근로자 보상 혜택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 한 명 이상의 상인이나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COVID-19(사례)와 동일한 증상이 있다고 알리면, 시장 관리자는 해당 사례자를 자택 고립하도록 하고, 직장에서 사례자에게 노출된 모든 직원을 즉시 자가 격리하도록 하는 계획 또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추가 노출자가 발생하면 COVID-19 관리 조치를 추가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격리 대상 직원에게 진단 검사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고용주의 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출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다른 상인들에게 연락하는 방법 또한 포함해야 합니다. 공중 보건국의 지침인 [직장의 COVID-19 대응법](#)을 참조하십시오.
- 직장 내에서 14일 이내에 3건 이상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집단발병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DPH에 (888) 397-3993 또는 (213) 240-7821 또는 온라인 www.redcap.link/covidreport로 보고합니다. 작업공간에서 집단발병이 확인되면 공중 보건국은 감염 통제 지침 및 권고, 기술적 지지 및 시설별 관리 조치를 포함한 집단발병 대응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국은 집단발병을 조사하고 시설 대응에 도움을 줄 사례관리자가 배정되었습니다.
-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모든 상인과 직원에게 코와 입을 가리는 적절한 안면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C DPH의 COVID-19 마스크 웹페이지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masks>를 방문하십시오. 상인과 직원은 업무 중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항상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상인과 직원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에 위생 천이 달린 안면보호대를 착용하여 주정부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천이 턱 아래에 딱 맞게 제작된 안면보호대가 선호됩니다. 단방향 밸브 마스크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직원들에게 안면 마스크를 매일 세탁이나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포함한, [안면 마스크 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을 알립니다.
- 직원들이 마스크를 일관되고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안전하게 벗을 수 있는 휴식 시간 외에는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금지됩니다. 직원은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 항상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선호됩니다. 큐비클이나 작업대가 직원들 간에 넓은 거리와 장벽을 제공하면 휴게실보다는 큐비클이나 작업대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선호됩니다.
- 직원들이 식사 및/또는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공간 또는 구역은 수용인원을 감소시키고 직원들 간의 거리를 최대화합니다. 이는 다음을 통해 달성합니다:
 -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또는 구역에 개인들 간 최소 6피트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최대 수용인원 게시하기, 그리고
 - 식사 및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또는 구역에서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엇갈리게 배정하기, 그리고
 - 테이블을 [최소](#) 8피트 간격으로 배치하기, 의자 사이에 6피트 간격 보장하기, 수용인원을 줄이기 위해 의자를 제거하거나 의자에 테이프로 사용 금지 표시하기, 얼굴을 마주하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의자 배치하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더욱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 사용이 권장되지만, 이를 수용인원 줄이기 및 신체적 거리 유지하기의 대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가능한 경우, 야외 휴식 영역을 조성하고,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6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늘막과 의자를 설치합니다. 임금과 근로 시간 규정을 준수하는 한해서 휴게실에서 직원 사이에 육(6) 피트 거리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엇갈리게 배정합니다.
- 모든 가판대와 가판대 내의 모든 작업대는 최소 6피트 분리해야 합니다.
- 휴게실, 화장실 및 기타 공용 구역은 영업 시간동안 다음 빈도로 최소 하루에 한번 다음 일정에 따라 소독합니다:

- 휴게실 _____
- 화장실 _____
- 기타 _____

소독제 및 관련 용품을 상인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장소에 비치합니다:

COVID-19에 효과적인 손 소독제를 모든 상인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장소에 비치합니다:

- 직원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잦은 휴식 시간을 허용합니다.
- 각 근로자에게 개인 도구, 장비 및 작업 공간을 할당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지는 물건(예: 전화기, 태블릿, 노트북, 책상, 볼펜 등)은 가능하면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 고용 조건과 관련된 것 이외의 본 점검표에 설명된 모든 정책은 배달 직원 및 제3자로 사내에 머무는 다른 회사 직원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 선택 사항 - 기타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B. 신체적 거리 두기를 위한 확실한 조치

- 공인 농산물 시장은 야외에서 열립니다. 시장의 최대 수용인원은 모든 직원, 상인 고객은 다른 가구의 사람들과 서로 6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야 합니다. 공인 농산물 시장은 야외 시장 수용인원의 **75%**로 수용인원을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시장 내 최대 고객 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_____
- 시장 관리자는 상인(모든 식품 및 소매 상인)에게 할당된 공간이 적절한 신체적 거리 요건에 따라 테이블, 캐노피 및 기타 전시를 설정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의 야외 사업 운영을 위한 임시 구조물 사용 필수 지침을 충족하는 경우, 텐트 또는 캐노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RFC에 설명된 요구 사항에 따라 음식 가판대는 예외입니다.
- 적절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 (하나 이상의 입구가 있다면, 직원들)은 시설 입구 근처, 가장 가까운 고객으로부터 최소 6피트 떨어진 곳에서 고객을 안내하고 시장의 수용 인원을 추적해야 합니다.
- 수용 인원 최대치에 도달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제 입장이나 예약 시스템 시행을 고려해 보십시오. 시장의 수용인원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경우, 공간이 있으면 지방정부 법규에 따라 고객이 줄을 서 대기하도록 허용하지만, 줄을 서는 동안 서로 6피트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 테이프나 다른 표시를 사용해 고객이 시장에 도착하면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도록 대기 줄의 시작 선부터 6피트 간격으로 대기 선을 표시해 이어 도착하는 고객들도 줄을 설 수 있도록 합니다.
- 상인과 고객 간의 신체적 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육(6) 피트 이상의 신체적 거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 가판대 열 사이의 통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만큼 넓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방통행 전용으로 명확하게 지정합니다.
 - 가판대는 두 명 이상의 고객이 내부에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크며, 서로 6피트 정도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인에게 직원들이 고객과의 6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판대를 설치하라고

지시합니다. 6피트 거리(예: 금전 등록기)가 불가능한 영역에는 플렉시글래스와 같은 불침투성 장벽을 설치합니다. 공중 보건국의 [장벽](#)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물리적 칸막이나 시각적 신호(예: 직원과 고객들이 서 있을 위치를 가리키는 바닥 표시, 색 테이프 또는 안내판)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상인이 도착해 가판대를 설치할 때 신체적 거리를 확보하도록 행사 전에 가판대 설치를 위해 도착하는 상인의 도착 시각을 엇갈리게 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 시장 영업 시간 동안 상인은 가능한 한 자신의 가판대에 머물고, 다른 사람들과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모든 영업 구역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야외의 지정 식사 구역에서만 현장 식품 섭취가 허용됩니다. 참석자에게 시장의 지정 식사 구역에서만 먹고 마시는 것이 허용된다고 반드시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시장 부지의 다른 곳에서는 식사/음용이 금지입니다.
 - 다른 테이블에 앉은 고객들과 최소 6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 테이블의 의자 뒤에서 근처 테이블의 의자 뒤까지 측정한 거리가 최소 육(6) 피트여야 합니다.
 - 한 테이블의 일행은 6명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 야외 구조물을 사용하는 야외 식사 시설은 캘리포니아 보건국의 [야외 사업 운영을 위한 야외 구조물 사용](#)에 관한 필수 지침에 명시된 대로 야외 시설에 대한 주정부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 공공 좌석 구역(예: 의자, 벤치 및 기타 공공 공간)은 신체적 거리두기를 도울 수 있도록 재배치합니다.
- ❑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운영은 야외에서만 허용됩니다. 무대나 공연자와 착석한 고객 그룹 사이에 최소 12피트의 거리를 뚜렷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입자, 에어로졸, 비말이 더 멀리 이동하는 목소리 방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연자는 공연 중에 최대한 마이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고객이 춤을 추는 것은 금지입니다. 고객 일행은 공연 중에 최대한 자리에 착석해야 합니다.
 -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관람하는 고객은 다른 사람들과 최소 6피트 신체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야외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관람하는 동안 야외 지정 식사 구역에 앉지 않은 한 식사나 음용은 금지입니다.

C. 감염 통제를 위한 조치

- ❑ 최소 60%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 휴지, 쓰레기통 등 적절한 위생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손 세척 장소가 시장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 자주 접촉하는 표면과 접근 가능한 구역을 위한 청소 및 소독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공용 구역과 고객의 픽업 및 결제와 관련되어 있어 자주 만지는 물건(예: 테이블, 문손잡이 또는 핸들, 신용카드 결제기기)은 영업시간 동안 EPA 등록 소독제를 사용하여 최소 하루에 한번 소독합니다.
 - 통행량이 많은 구역의 표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노출된 표면은 청소 및 소독을 늘리십시오.
- ❑ 고객들에게 시장에 있는 동안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이는 만 2세 이상의 어린이와 모든 성인에게 적용됩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사람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에 위생 천이 달린 안면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이 턱 아래에 딱 맞게 제작된 안면보호대가 선호됩니다. 단방향 밸브가 있는 마스크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직원과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안면 마스크를 준비하지 않은 고객에게 제공할 안면 마스크를 구비해 둡니다.

- 고객은 야외의 지정 식사 구역에서 식사/음용하는 동안에만 안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음식이나 음료수를 섭취하려면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고객은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동안 걸거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 안면 마스크의 착용을 거부하는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거부하고 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카운티 DPH의 **입장 증상 점검 지침**에 따라, 고객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증상 점검을 시행합니다. 점검에는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발열 또는 오한, 그리고 개인이 현재 고립 또는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직접 수행하거나, 온라인 시스템 점검 또는 방문자에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시설에 입장하지 말라고 알리는 **안내판**을 시설 입구에 게시하는 등 대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성 증상 점검(출입 허가): 증상이 없고 지난 **10**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일 시설에 입장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양성 증상 점검(출입 비허가):
 - 지난 10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현재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quarantine에 있는 격리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어떤 증상이라도 보이거나 현재 고립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고립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isolation에 있는 고립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시장에 아이들과 함께 도착하는 고객들은 아이들이 부모 옆에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나 본인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자녀가 마스크 착용 필수 연령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 비 접촉 결제 기기를 준비했거나, 준비가 불가능하면 결제 기기를 규칙적으로 소독합니다.
- 야외 화장실과 손 세척 장소에는 손 비누, 종이 타월, 그리고 비 접촉 쓰레기통이 제공됩니다. 야외 공중 화장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EPA 등록 소독제를 사용하여 **최소 하루에 한번 또는 필요한 만큼 자주** 청소 및 소독합니다:
- 공공 분수식 식수대를 차단하고, 작동하지 않음을 고객에게 알리는 안내판을 게시합니다.
 - 고객은 시장 전체의 공용 장소에 사용되는 손 소독제, 휴지, 휴지통 등 적절한 위생 제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판대 상인은 가판대에 손 소독 장소를 제공하여 자신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린이 놀이 공간, 활동 영역 또는 기타 편의 시설(예: 휴일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선택 사항- 기타 조치를 설명하십시오(예: 노인 전용 시간 제공, 온라인 주문/픽업 주문 권장, 붐비지 않는 시간대 구매 보너스 제공):

식품 서비스 안전 고려 사항

- 캘리포니아 소매업체 식품 관리법(CRFC)에 명시된 모든 식품 안전 관리를 유지 및 준수합니다.
- **DPH의 식당 프로토콜**에 따라, 야외 식사 공간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음식 판매 상인은 손님이 식사와 동일한 거래로 구매할 때만 술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도구와 기구의 세척 및 소독은 CRFC가 명시한 횟수만큼 시행하십시오.
- 직원 건강 및 위생 관리 규칙을 준수합니다. CRFC는 직원에게 아프면 일을 하지 말고, 손을 자주 씻고, 장갑을 착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 모든 음식과 음식 재료가 승인된 식품 공급업체에서 공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음식을 준비하는 직원은 근무 중에 다른 사람과 작업대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작업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 포장되지 않은 음식의 시식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D.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조치

- 본 프로토콜 사본 또는 시장의 COVID-19 안전 준수 인증서를 받은 시설은 인증서 사본을 시설의 모든 공공 입구에 게시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COVID-19 안전 준수 자가 인증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싶으시면, <http://publichealth.lacounty.gov/eh/covid19cert.htm>를 방문해 주십시오. 시설은 요청시 검토할 수 있도록 시설 현장에 프로토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시장 입구와 각 가판대에는 고객에게 6 피트의 거리 유지, 안면 마스크 항상 착용의 필요성, 정기적인 손 씻기의 중요성, 몸이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이 있으면 집에 있어야 함을 상기시키는 안내판을 게시합니다. 추가 자료 및 업종별 사용 가능한 안내문 예시를 보시려면 [카운티 DPH COVID-19 지침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안내판을 게시하여 개인들에게 시장에 있는 동안 지정된 야외 식사 공간을 제외한 다른 공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 시장 전체에 안내판을 게시하여 고객들에게 근처의 손 소독제 디스펜서 위치를 알려줍니다.
- 시장은 온라인 광고(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를 통해 시장 운영시간, 안면 마스크 사용 필수, 수용인원 제한, 사전 주문, 선불, 픽업 및/또는 배송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 중요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

- 손님/고객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합니다.
-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매 또는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 이동에 제한이 있는 고객 및/또는 공공장소에 가면 위험한 고객도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합니다.

위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추가 조치는 별도의 페이지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본 문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본 프로토콜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사업체 담당자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마지막 개정일: _____